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제 858 호

1981. 9.11

# 시 보

## 차 리

◎ 조	배		
제 1536 호 :	서울특별시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	3
◎ 고	시		
제 324 호 :	건축물높이지정구역고시	.....	4
제 3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	5
제 32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	5
제 328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증축) 시행허가	.....	6
제 329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	6
제 33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7
제 331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대시설) 실시계획인가	.....	8
제 332 호 :	담수어판매장소지정취소	.....	9

<이번호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834

◎	공 고	
	제 243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 9
	제 244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10
	제 245 호 :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 11
	제 256 호 ( 강남구 ) :	유해조수구제공고 ..... 11
◎	예 규	
	제 415 호 :	저소득시민생활편익시설운영요령(안) ..... 11
◎	사 령	
◎	출시통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 영 수 ㉔  
1981. 9. 8.

○서울특별시조례 제 1536 호

서울특별시어린이집운영  
위탁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비동보 조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운영위탁 ) ①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 3 조 (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 수동정원 및 입퇴소 ) 어린이집의 수동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 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어린이집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 지원 )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농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 7 조 ( 감독 )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  
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  
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입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  
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제 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 5조의 의무를 위  
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  
이 없다고 인정될때
3. 수탁자에게 동의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  
을때

제 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에 관  
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10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이전에 어린이집  
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24 호

건축물높이지정구역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의  
5필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균  
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건축조례 제 16조 제 3항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축법 제  
개발1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81. 9. 7.

서울특별시장

다 음

- 가. 위치 : 중구소공동 97-3, 97-4,  
울지로 1가 193-1, 193-2, 194-1,  
192-11 일부 ( 6필지 )
- 나. 면적 : 1,050㎡ ( 317.6㎡ )
- 다. 건축물높이 : 15층 ( 주위건물  
높이에 상당한 높이 )

◎서울특별시고시제 3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4 호(81. 7.11)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공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1. 9. 8.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구분	등급	류별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 로	3	50미터	강동구명일동 251-2	명일동 251-2	
"	"	"	40 "	"	" 281	
"	"	"	20 "	" 278-3	" 274	
"	"	"	100 "	" 261	" 65-1	
"	"	"	20 "	" 265	" 348-2	
"	"	"	65 "	" 268	" 65-5	
"	"	"	30 "	" 278	" 27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44-8 호외 18 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연립 및 부대시설) 하고 동법 제 33 조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 9. 8.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번호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점	소로	2	8미터	1	142미터	강동구둔촌동 150-11	강동구둔촌동 147-4호	
변경	"	"	"	1	"	"	"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도면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 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증축)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공고 제 71 호 ( 76.3.31 ) 로 환지처분 인가공고된 동대문구 면목동 160 번지 1 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 79.12.10 ) 권한위임사함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9. 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면목동 160 의 1 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증축 )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토지 ( 1 필지 ) : 2,591.1㎡

( 783.8 명 )

- 2) 건물 : 판매장 및 관리시설 1 동 4,904.46 ㎡ ( 1,483.60 명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동대문구 면목동 160-1 번지  
장안상협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범 의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일 : 1981.9
  - 2) 준공일 : 1982.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 없음
- 아. 공사설계도서 : 별첨 ( 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9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건설부고시 제 315 호 ( 81.8.24 ) 로 일부 변경 결정된 서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 79.12.10 ) 권한위임 사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1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1. 9. 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조서

공원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근 12-21	근린공원	서초공원	강남구서초, 방배동	578,959㎡	572,347㎡	감6,612㎡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30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6호 (74.4.18)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1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9. 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 5가126-16 외 2필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명칭 : 고려대학교시설확충  
다. 사업시행면적 : 369,435평방미터  
라. 건축계획 : 건축면적 : 4,671.26 평방미터 (7동)  
연면적 : 8,060.88 평방미터  
○식당-건 : 498.18 평방미터, 연 : 1,348.72㎡,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전산소-건 : 487.04㎡, 연 : 1,713.72㎡ (신축)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이공대동관-건 : 763.56㎡ 연 : 763.56㎡ 지상 4층 - 5층으로 증축,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이공대서관-건 : 763.56㎡ 연 : 763.56㎡

지상 4층 - 5층으로 증축, 철  
근콘크리트라멘조

○신관 - 건 : 1,312.40 ㎡  
연 : 2,624.80 ㎡

지상 1층 - 3층으로 증축, 석  
조

○사대 - 건 : 794.58 ㎡  
연 : 794.58 ㎡

지상 2층 - 3층으로 증축, 석  
조

○수위실 - 건 : 51.94 ㎡  
연 : 51.94 ㎡

(신축) 지상 1층, 조석조

\* 별첨도면표시참조 (도면생략)

마.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성북구안암동 5가 1번지 학교법  
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환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3.10.30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사용할토지 : 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160, 042 ㎡  
(학교용지)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 29-26,  
59, 207 ㎡(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 5가 1-2,  
150, 186 ㎡(학교용지)

자.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고려중앙학

원 (수용할 토지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331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  
대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호 (81.3.23)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지하철 2호선 제 2차량기지 (차고) 및 인입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대시설)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 에 의하여 이를 인가 및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기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9.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신정동  
(132, 215, 249번지 일대)  
구로구신도림동  
(322, 330, 344번지 일대)  
고척동 (3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지하철 2호선 제 2차량기지 및 인입



<p>선건설공사</p> <p>3. 사업규모</p> <p>가. 인입선 : 폭 10 미터 - 20 미터 연장 2,250 미터</p> <p>나. 차고 : (면적) 258,577㎡ (78,220 평)</p> <p>4. 사업시행처 :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인가일 ~ 86.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명세 : 별첨 (생략)</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목록 :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32 호</p> <p>담수어 판매 장소 지정 취소</p> <p>수산자원 보호령 제 21 조 제 1 단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0 호 ( 80.8.22 ) 로 지정 한 담수어 판매장소 지정을 취소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9. 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기정번호	판 매 장 소			취급종목
	주 소	사업주체	사업장명칭	
01	서울특별시 중구 충림동 28 의 3	사단법인내수면 기발전흥협회	서울특별시 지정 담수어 판매장	담수어 (관상어포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공 고</p> </div> <p>◎ 서울특별시공고제 243 호</p> <p>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 처분한바 있는 아래사 함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순해</p>	<p>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년 9월 8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허가번호 : 제 2223 호</p> <p>허가일자 : 80.10.13</p> <p>제조업체명 : 용원산업</p> <p>대표자 : 김실근</p> <p>소재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 2 가 9</p> <p>규격번호 : KS 24505</p> <p>참 명 : 도어클로우저</p>
--	--

처분일자 81.6.9  
해제일자 81.9.8  
종류및등급 표준형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계시판  
나. 공고기간: 81.9.14-81.9.  
27 (14일간)

◎ 서울특별시 공고제 244 호

1981. 9. 8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장

1. 건설부 고시제 198 호 ( 71.4.7 )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06 호 ( 73.

공 랑 개 요

12.24 ) 로 시설 결정 지적 승인된  
광로 28 호선 연장 1,000 미터 구간과  
건설부 고시제 198 호 ( 71.4.7 )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08 호 ( 73.12.  
24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대로 3 류 108 호 연장 870 미터  
구간내 저촉 편입되는 토지 및 건  
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 2 의 규정  
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1. 사업시행지: 가락동 334 번지 - 가락  
동 538 번지, 가락동 214  
번지 - 가락동 660 번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  
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농수산물종합  
도매시장의 확 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50 미터  
연장 1,000 미터  
도로개설폭 25 미터  
연장 870 미터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인가일 -  
8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및 건  
물: 별첨조서 (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별첨조서 ( 생략 )

○ 서울특별시 공고제 245 호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  
납입고지서공시종달

81. 7. 1자로 납인 고지한 도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청산금 납  
입고지서가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한  
바,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종달한다.

1. 공시종달 대상 : 도봉지구  
(방학동 김태형외 143건)

※ 대상자 명단은 도시행정과  
비치

2. 공시내용 : 청산금 납입고지서  
81. 7월분

가. 납부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

나. 납부기한 : 81. 7. 1 ~ 12. 30까지

○ 강남구 공고제 256 호

유해조수구제공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유해조수 구제업무 처리  
지침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포획목적 : 유해조수 구제

2. 포획대상조수류 : 참 새

3. 포획지역 : 강남구 양재동, 구면  
동, 신원동, 원지동, 개포동, 포이  
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을현  
동, 새곡동, 내곡동, 염곡동

4. 포획기간 : 1981. 9. 11 ~ 82. 3. 31

5. 포획방법 : 공기총, 그물

6. 포획자 : 강남구청장 발행 조수  
포획허가증 소지자에 한한다.

1981. 9. 10

강 남 구 청 장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제 415 호

저소득시민생활편익시설  
운영요령 (안)

제 1 조 ( 목적 ) 이 요령은 시립노인  
정, 시립독서실, 시립새마을 공동작  
업장등 저소득 시민생활 편익시설  
(이하 "생활편익시설" 이다 한다 )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생활편익시설 운  
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생활편익시설 이용대상자) 생활편익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시립노인정 : 저소득 시민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 2. 시립독서실 : 저소득 시민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또는 18세 이하 근로학생
- 3. 시립새마을 공동작업장 : 저소득 시민

제 4 조 (관리 및 운영책임) ① 생활편익시설은 관할 구청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위임 운영하거나 관리자가 인정하는 지역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어떠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재산관리) 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시유재산으로서 보전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보수 또는 증, 개축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거주용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전월임차계약) 관리자는 시립새마을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사유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 임차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임차 계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월세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비) 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건물유지관리
- 2. 공공요금
- 3. 기타 필요한 경비

③ 제 4 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적 경비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이용료 징수금지) 관리자는 이용자로 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안전수칙)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생활편익시설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수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일지 비치)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별로 별지 1 호 내지 3 호

<p>양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감독)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보존 상태</li> <li>2. 이용자, 이용상태</li> <li>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제 12 조 (운영상황보고) 관리자는 생</p>	<p>활편익시설의 매분기 운영 실적을 별도 지시하는 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한다.</p> <p>제 13 조 (생활편익시설 목적변경보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폐쇄하고자 할때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와 면도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	---

<별지 1 호>

업무일지 (노인정)

작성가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구 분	계	남		
이 용 자	금 일			여	비 고
	누 계				
금 일 지원 사항					
금 일 준비 사항					
특기 사항					

<p>&lt;별지 2호&gt; <u>업무일지 (특서실)</u> <span style="float: right;">작성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  </span></span></p>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이 용 자	구 분 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기 타				
	금 일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누 계										
금 일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 회</li> <li>○ 음료수공급 회</li> <li>○ 기타</li> </ul>										
금 일 준비사항											
특기사항											

[별지 3 호]							
<u>업무일지 (새마을공동작업장)</u>							
작성자 <span style="float: right;">㉞</span>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작업인원	구분	계		현장 작업		귀가 작업	
		남	여	남	여	남	여
	금일						
	누계						
작업내용							
특기사항							

사 령

◎ 1981년 9월 7일자 명제 341호  
지방행정사무관 주 순 식

부직을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81년 9월 16일자 명제 342호

청 소 과 신 영 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81년 9월 7일자 명제 343호

운 영 과 김 상 의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중앙계획통계단 파견  
근무를 명함 ( 81.9.7 - 81.9.26 )

투 목 시험 소 이 재 명  
지방토목기과

울지연습 '81 수도권단 파견근무를  
명함 ( 81.9.9 - 81.9.26 )

공 업 과 이 군 우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개업지회소 파견근무를  
명함 ( 81.9.10 - 81.9.24 )

구 직 정 리 과 황 선 문  
지방토목기사

울지연습 '81 수도권단 작전처파견  
근무를 명함 ( 81.9.10 - 81.9.20 )

재 개발 1 과 성 광 수  
지방지적기사

울지연습 '81 수도권단 작전처파견  
근무를 명함 ( 81.9.10 - 81.9.20 )

◎ 1981년 9월 15일자 명제 344호

전 라 복 도 김 사 원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 1981년 9월 8일자 명제 345호

서 울 특 별 시 기 회 관 리 관 도 지 훈  
이 사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p>서울특별시산업국국장 이 사 관 김 백 수</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영등포구청장 부 이 사 관 변 의 정</p> <p>감사관에 포함.</p>
<p>서울특별시수도국국장 공 업 기 감 김 인 주</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환경국장 이 사 관 박 순 철</p> <p>내무국장에 포함</p>
<p>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부 이 사 관 이 집 흥</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세종문화회관장 지 방 이 사 관 윤 백 영</p> <p>이사관에 임함. 산업국장에 포함.</p>
<p>대 통 령</p>	<p>주택국장직무대리 부 이 사 관 이 권 중</p> <p>주택국장에 포함.</p>
<p>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 건설 사업 소 장 정 석 현 지 방 시 설 부 기 감</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종로구청장 부 이 사 관 도 재 용</p> <p>교몽국장에 포함.</p>
<p>서울특별시 장</p> <p>◎ 1981년 9월 11일자 령제 353 호</p> <p>내무국장 이 사 관 김 진 원</p>	<p>성북구청장 부 이 사 관 정 영 섭</p>
<p>기획관리관에 포함.</p>	<p>종로구청장에 포함.</p>

<p>동대문구청장 안 기 호 부 이 사 관</p> <p>구청장에 포함.</p> <p>지하철건설본부차장 강 덕 기 지 방 부 이 사 관</p> <p>이 사 관에 입함.</p> <p>산구청장에 포함.</p> <p>강남구청장 김 제 탕 부 이 사 관</p> <p>동구청장에 포함.</p> <p>성동구청장 신 현 석 부 이 사 관</p> <p>대문구청장에 포함.</p> <p>공 보 관 김 진 호 지 방 부 이 사 관</p> <p>부 이 사 관에 입함.</p> <p>성북구청장에 포함.</p> <p>강동구청장 심 계 성 부 이 사 관</p> <p>대문구청장에 포함.</p>	<p>지하철운영사업소장 박 중 우 지 방 부 이 사 관</p> <p>부 이 사 관에 입함.</p> <p>마포구청장에 포함.</p> <p>중구청장 이 광 하 부 이 사 관</p> <p>구로구청장에 포함.</p> <p>마포구청장 신 채 영 부 이 사 관</p> <p>영등포구청장에 포함.</p> <p>감 사 관 이 원 택 부 이 사 관</p> <p>동작구청장에 포함.</p> <p>동작구청장 김 인 동 부 이 사 관</p> <p>관악구청장에 포함.</p> <p>구로구청장 김 진 욱 부 이 사 관</p> <p>강남구청장에 포함.</p>
--	---

<p>서대문구청장 김 두 한 부 이 사 관</p> <p>강동구청장에 포함.</p> <p>교통국장 이 영 화 이 사 관</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새종문화회관장에 포함.</p> <p>대 통 령</p> <p>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 재 환 지 방 부 이 사 관</p> <p>지하철운영사업소장에 포함.</p> <p>새마을담당관 백 상 승 지방부이사관</p> <p>남서울개공원건설사업소장에 포함.</p> <p>공원녹지국장 강 병 수 이 사 관</p> <p>환경국장 결입을 명함.</p>	<p>◎ 1981년 9월 3일자</p> <p>세무국장 김 완 중 부이사관</p> <p>재무국장 결입을 명함.</p> <p>◎ 1981년 9월 9일자</p> <p>학 수 국 장 박 원 선 시설부기감</p> <p>수도국장 결입을 명함</p> <p>◎ 1981년 9월 11일자 명제 348 호</p> <p>강동구시민국장 천 남 수 지 방 서 기 관</p> <p>지역담당관</p> <p>내무국 조 성 두 서기관</p> <p>주백정비과장</p> <p>세무행정과장 정 지 호 서 기 관</p> <p>은평구청장</p>
---	--

<p>내무국 서기관 김 원 근</p> <p>성북구 건설국장</p> <p>지역담당관 서기관 권 찬 명</p> <p>내무국</p> <p>◎ 1981년 9월 20일자</p> <p>사회지도담당관 서기관 김 문 종</p> <p>감사담당관 (사회지도담당관겸임)</p> <p>상정과장 서기관 서 정 희</p> <p>행정과장</p>	<p>감사담당관 서기관 김 조 권</p> <p>상정과장</p> <p>◎ 1981년 9월 12일자      형제 354호</p> <p>내 무 국      성 진 호 별정직지방 4 급상당</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1981년 9월 14일자      형제 356호</p> <p>총 무 과      임 충 남 지방행정주사</p> <p>종로구근무를 병함.</p> <p>서울특별시장</p>
---	--

출 석 통 지 서

인	성 명	이 강 순 ( 李 康 準 )	소 속	공무원교육원
	직 명		직 명	지방행정서기
적	본 적	전북 완주군 응진면 신지리 1322		
	주 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3-14		
사	성 명	곽 우 영 ( 郭 宥 榮 )	소 속	주택국주택행정과
	직 명		직 명	지방행정사무관
함	본 적	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 114		
	주 소	서울 영등포구 화북동 352-47		
인	성 명	이 현 삼 ( 李 賢 三 )	소 속	건축지도과
	직 명		직 명	지방건축기사
적	본 적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4-3		
	주 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8-3		
출 석 이 유	인사위원회 진술			
출 석 일 시	1981년 9월 23일 14:00 시 분			
출 석 장 소	시청 기획상황실 ( 13:30 까지 출두 )			
유 의 사 함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1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성 명	( )	소 속	
	직 명		직 명	
적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